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의3서식] <개정 2016. 8. 30.>

제　　호

가족·종중·문중자연장지 조성(변경)신고증명서

명칭			
소재지			
면적		조성(변경)연월일 년　　월　　일	
조성(변경)내용			
대표자	성명(종중·문중명)	생년월일	
	주소(종중·문중 주소) (전화번호 :　　)	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·제3항·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(　　) 자연장지 조성(변경)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　관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150g/㎡]